

의안번호	제 196 호
의 결 연 월 일	2023년 2월 일 (제 회)

충청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박지현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3년 2월 28일

충청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지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6
----------	-----

발의연월일 : 2023년 2월 28일
발의자 : 박지현, 이동우, 김종필,
김호경, 박진희, 변종오,
유재목

1. 제안이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과 최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실현이 더욱 강조됨에 따라 기존 ‘녹색제품’ 개념의 포괄적 구체화와 이와 관련된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내용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정의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2조)
- 나. 녹색제품구매촉진 협의회 및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4조, 안 제6조)
- 다. 판단기준의 설정·관리 및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7조, 안 제8조)
- 라. 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11조)
- 마. 제15조 기관 평가 및 제17조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삭제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 충청북도 환경삼림국 환경정책과

라. 조례안 예고 : 예고대상(의회 홈페이지 게시 예정)

충청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구매이행계획”이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3. “구매실적”이란 도지사가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
4.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충청북도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5. “자발적 협약”이란 도지사,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영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다음 연도”를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로, “수립하고,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를 “수립하고,”로, “홈페이지와 공보 등”을 “홈페이지”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의회에서 정하되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를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순환골재” 를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 을 “에너지사용기자재 및 에너지관련기자재” 로 한다.

1. 「친환경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제8조제2항 중 “충청북도홈페이지와 공보 등에 의한다” 를 “충청북도 홈페이지에 한다” 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실시하여야 한다” 를 “실시할 수 있다” 로 한다.

제15조 및 제17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녹색제품”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상품을 말한다.</p> <p>2.“구매이행계획”이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p> <p>3.“구매실적”이란 도지사가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p> <p>4.“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충청북도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p> <p>5.“자발적 협약”이란 도지사,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p> <p>2. “구매이행계획”이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p> <p>3. “구매실적”이란 도지사가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p> <p>4.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충청북도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p> <p>5. “자발적 협약”이란 도지사,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p>

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녹색제품구매촉진협의회)

①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다음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녹색제품구매 촉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1. ~ 7. (생략)

② (생략)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이를 충청북도 홈페이지와 공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7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①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이라 한다)의 설정은 협의회에서 정하되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제4조(녹색제품구매촉진협의회)

① -----

--- 운영할 수 있다.

1.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

---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
----- 수립하고, -----
홈페이지-----
-----.

②·③ (현행과 같음)

제7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①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저공해 자동차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3. (생략)

4.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

5. (생략)

② ~ ④ (생략)

제8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① (생략)

②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는 충청북도홈페이지와 공보 등에 의한다.

③ (생략)

제11조(교육) ① 도지사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5조(기관 평가)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1. 「친환경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2. -----
-----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3. (현행과 같음)

4.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장제1절에 따른 에너지사용기자재 및 에너지관련기자재

5.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① (현행과 같음)

② -----
----- 충청북도 홈페이지에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교육) ① -----

----- 실시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삭제>

② 도지사는 녹색제품 구매실적이 우수한 시장·군수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75조, 「하수도법」 제63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56조에 따른 환경관련 보조금을 우선하여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환경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관계법령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지침)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5.>

제8조(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구매지침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당해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5., 2012. 2. 1.>

② (생략)

제17조(구매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환경부장관은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사업자,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을 위한 생산·소비 문화의 확산) ①

~ ③ (생략)

④ 정부는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이하 “녹색제품”이라 한다)의 사용·소비의 촉진 및 확산을 위하여 재화의 생산자와 판매자 등으로 하여금 그 재화를 생산하는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양에 대한 정보 또는 등급을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생략)